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 ☐ 지원규모: 100억원 내 · 외
- ☐ 신청기간: '23. 8. 7.(월) ~ '23. 8. 25.(금)(재원 소진 시까지)
- ☐ 지원대상: ①건설업(본사 지원), ②조선업중(협력업체 포함), ③제조업*, ④운수·창고업, ⑤도·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①건설업(본사) ②조선업(업종코드: 226**) ③제조업(작업환경측정결과: 고열작업공정 보유) ④운수·창고업(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⑤도·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장 신청서류 제출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 전경·주차장 카트 등

< 지원제외 대상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담수급 등)에 따른 참여 제한기간 중인 자
-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안전투자혁신,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 결정 사업장
- ▶ '23년 폭염예방설비 지원 결정사업장(자금결정 취소 사업장은 제외)

- ☐ 지원한도 · 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별첨 참고]

-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품목명	최대지원한도	지원기준	비고
	냉방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건설업 본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제조업 등)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 지원 불가 (단, '20~'22년 기지원대수는 차감)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사무실용 지원 불가
	그늘막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건설업 본사)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제조업 등) 지원 불가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이동식에어컨 근로자수 산정 시 상시 근로자수(ERP) 기준으로 하되,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 (신청 시 제출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수량 조정 가능(단, '20~'22년 이동식에어컨 기지원 대수는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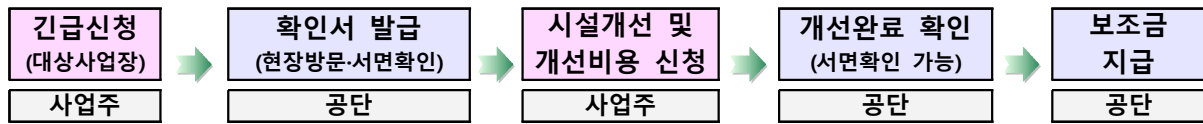
-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 신청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문의: ☎ 1544-3088)

□ 추진절차

[폭염대비 긴급 재정지원 추진 절차]



※ 오프라인 신청 시, 클린사업(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등) 기 지원 내역 확인 후 일선기관 신청
☞ 기지원내역 확인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가. 긴급신청

- (신청기간) '23. 8. 7.(월) ~ '23. 8. 25.(금)(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 ※ 기 지급 보조금과 기 지원 이동식에어컨 대수는 차감하여 보조금 한도 내 지원

나. 확인서 발급

-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통해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및 **이행확인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 * 투자계획 적정성, 이동식에어컨 수량, 지원대상 관련서류 등 확인 시 서면확인 가능

다. 시설개선 및 개선비용 신청

- (시설개선)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비용신청)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FAX로**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출

라. 개선완료 확인

-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통해 **결정통보서 발급**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결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구**(미제출 시 취소)
- * 투자계획 적정성, 이동식에어컨 수량, 지원대상 관련서류 등 확인 시 서면확인 가능

마. 보조금 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지급일정은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3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별첨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사업주 부담금액(30%)	공단 지원금액(70%)
냉방 능력		~3,000kcal/h (3,489W)	가격결정 근거자료(원가계산서 등) 제출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단, 상위 냉방능력 지원금액 초과 불가)		
	3,000kcal/h (3,489W)	4,000kcal/h (4,652W)	1,138천 원	342천 원	796천 원
	4,000kcal/h (4,652W)	5,000kcal/h (5,815W)	1,228천 원	369천 원	859천 원
	5,000kcal/h (5,815W)	6,000kcal/h (6,978W)	1,488천 원	447천 원	1,041천 원
	6,000kcal/h (6,978W)	7,000kcal/h (8,140W)	1,713천 원	514천 원	1,199천 원
	7,000kcal/h (8,140W)	8,000kcal/h (9,304W)	2,012천 원	604천 원	1,408천 원
	8,000kcal/h (9,304W)	9,000kcal/h (10,465W)	2,052천 원	616천 원	1,436천 원
	9,000kcal/h~ (10,465W)		2,559천 원	768천 원	1,791천 원

*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된 공단 판단금액으로 제품 구입시 표준 가격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30%와 합산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표준가격 이하 제품 구입시 실제 구입가격으로 지원금액(70%) 재산정

○ (그늘막)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사업주 부담금액(30%)	공단 지원금액(70%)
면적 (=그늘막 가로×세로)		~5㎡	234천 원	71천 원	163천 원
	5㎡	10㎡	256천 원	77천 원	179천 원
	10㎡	15㎡	300천 원	90천 원	210천 원
	15㎡	20㎡	320천 원	96천 원	224천 원

* 측면 그늘막, 벨크로테이프, 염색 여부,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불가

○ (구입방법)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선정하여 온라인(소셜커머스 등) 또는 오프라인(제작·판매업체)으로 구입

※ 신청사업장-제작·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 공단은 구입 금액의 일부 지원만 하며, 제품불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재정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신청대비 지원가능 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처(소셜 커머스 및 제작·판매업체)는 귀사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구매함에 따라 제품의 품질(성능) 및 구성품 등의 적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와 구매처 간의 매매임에 따라 공단은 이에 대한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소셜 커머스) 구매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온라인(제작·판매업체)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③은 반드시 제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③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나. 보조지원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보조지원·보조금이 취소 및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5배)
- 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배)
-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2배)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2배)
-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다. 보조금 지급 예정 알림 안내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1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제출, 발급 불가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안내한「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와「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서약 위반, 폐업, 근로자 사망(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설비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